

「평창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09.09(금) 평창군수(주민생활지원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9. 20(화)
- 상정일자 : 2016. 09. 20(화) 제22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)

- 1982년 2월 16일 해당 조례가 제정된 후 2005. 1. 5 평창군사회복지 기금 설치조례로 제정 통합되었으나, 현재까지 조례가 존치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는 1982년 2월 16일 제정된 이후, 2005. 1. 5 「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조례」로 통합되었으나, 현재까지 존치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